



since 1948

세계인권선언 제63주년 기념식

| 일시 : 2011. 12. 9.(금) 11:00 ~ 12:00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19층)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제63주년 기념식



사회: 운영지원과장

개식선언 사회자

국민의례 사회자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기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보영상물 상영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폐식선언 사회자

“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인권이 꽂피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가족여러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3주년을 맞았습니다. 매년 이 날을 맞아 우리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선언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은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1948년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의 1958년 유엔본부 연설 한 대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편적 인권은 결국 우리의 집에서 가까이 있는, 너무 작아서 세계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인권을 가까이 하려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없다면, 큰 세상에서 발전하고자 해도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 그리고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는 모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진정, 상담, 민원, 안내 건수는 38만 건 정도 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이고 최근의 급증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연간 1~3만 건이었지만 지난 2008년 연 5만건을 넘었고 이런 증가추세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를 보면 하루 평균 160건으로, 다시 말해 하루에 160명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 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1월25일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더 낮고 어두운 곳으로 뛰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인권이 일상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권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인권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사실 상상력은 문명의 근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상상력,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오늘의 문명사회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권도 그런 과정에서 정립되고 보편성을 확보했으며,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정한 주제도 이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엔이 발표한 인권의 날 주제는 ‘소셜미디어와 인권’입니다. 유엔은 재스민 혁명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열풍의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 있으며, 이를 실현한 수단으로 소셜미디어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유엔은 세계 시민들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주제를 정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말 그대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통상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발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달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권에 대한 상상력이 문명의 근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는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인권현안을 빼놓지 않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격려와 채찍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더욱 성숙된 자세로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뜻 깊은 세계인권선언 63주년 기념식에서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훈장을 수상하신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소장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김난희 지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허명철

○ 심사기준 및 선정과정

공적심사위원회 구성(6인)

- 위원장 : 최혁(前 주제네바 대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외부위원 : 김덕현(변호사), 김상겸(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 내부위원 : 김영혜 상임위원, 손심길 사무총장

심사기준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공헌도, 활동(연구)실적, 활동(업무)기간, 특수공적 등

선정과정

추천 및 접수(총37 개인 및 단체 추천) → 요건 및 사실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 → 공개검증 → 훈·포장
서훈대상자 추천(행정안전부) → 차관회의·국무회의 → 대통령재가

훈장 수상자

송상현(宋相現)

- ▣ 훈격 : 국민훈장(무궁화장)
- ▣ 소속 :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소장 및 상소심재판관
- ▣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미국New York대 법대 석좌교수, 미국 하버드·컬럼비아·워싱턴·하와이·호주 멜버른·뉴질랜드 웰링턴대학교 등 한국법 교수, 대법원송무제도개선위원, 법무부 자문위원, 국무총리 사정개혁위원, UNICEF한국위원회 이사 및 부회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위원회 이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창립이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대통령위원회 민간위원, 국제형사재판소 초대재판관 등
- ▣ 주요공적 : 법조인으로서 사법제도 및 정책개선에 기여하고 인권문제 중, 특히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소외된 가정의 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운영,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회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법률구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창립이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 등의 자격에서 아동과 여성의 권리 및 건강, 사회적 복지신장을 위해 헌신함.
 2003년 세계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약칭 ICC) 초대 재판관 후보로 정부지명을 받고 85개 회원국 중 65개국의 인정을 받아 재판관에 당선, 2006년 1월에 재선되었으며 2009년에 ICC 동료재판관들의 추천을 받아 2대 재판소장에 선임됨.
 전쟁, 집단학살, 침략 및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 등 새로 등장한 국제형사정의시스템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열악한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된 지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법해석과 정책집행으로 국내외적 공감대 및 지지를 받으며 국제사회를 선도함.
 각국의 국가원수,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제기구 수장, 국제NGO 단체 등과 긴밀한 회담을 통하여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아동, 여성 및 로마조약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권행동플랜이나 국내입법의 이행을 촉진하여 전세계인의 인권 보호 및 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국익에 크게 기여함

포장 수상자

김 난 희(金蘭姪)

- ▣ **훈 격 :** 국민포장
- ▣ **소 속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장
- ▣ **주요경력 :** 티엘엠 선교회 예수의원 의무원장,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및 대구지회장, 대한나학회 회원 및 이사, 보건복지부장관 대구경북 나관리 지역지도 의사, 계명의대 피부과 외래교수, 카톨릭의과대학 피부과 외래교수, (대학나학회 이사장, 경희의료원 피부과 외래교수,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 커뮤니티 위원회 자문위원 등
- ▣ **주요공적 :** 30여 년간 한센환자들을 손수 치료 및 이동진료를 통해 한센환자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를 몸소 실천하여 현재 한센환자는 연 30명 미만으로 발생할 정도로 유병율이 낮아짐. 직접 에이즈 감염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 및 진료하고 지역의 의사와 의료인들에게 에이즈 감염인 치료를 적극 호소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침해 실태 및 에이즈 예방사업에 기여함. 가족과 사회로부터 유리된 감염인들을 위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 장 등과의 활발한 접촉과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감염인에 대한 편견해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공헌함

세계인권선언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현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3조 …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 4조 …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 5조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6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 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8조 …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9조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 10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1조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 12조 …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 13조 …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 14조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 15조 …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6조 …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 17조 …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18조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19조 …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20조 …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21조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 22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3조 …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4조 …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 25조 …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26조 …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27조 …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 28조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운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 29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 30조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서울시 종로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Tel 02)2125-9715

<http://www.humanrights.go.kr>